

비전임 대학교원 실태와 개선 방향

김 혁근 |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

I. 머리말

대학교원은 대학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위치에서 각자 전공분야에 대한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실천한다. 따라서 학문적 역량은 물론 훌륭한 인격과 책임의식을 갖춘 전임교원을 얼마나 확보하여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대학교육의 질이 달라진다. 이 점에서 대학교원은 신분이 안정되고 사기가 높아야 함과 동시에 전공 학문에 대한 타월한 능력의 보유가 요구된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대중화 현상과 대학간 격차로 인해 대학마다 기대하는 전임교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학 재정 문제나 첨단산업의 발전에 따른 고급인력의 사회적 분산으로 비전임교원제도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비전임교원이란 실정법 상의 개념이 아니라, 정규교원과 신분·보수·복무 등 임용 조건이 다른 상태에서 학생교육 또는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지칭한다. '80년대 이전까지는 대체로 시간강사나 외국인 교수 또는 명예교수 등을 비전임교원이라 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교원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전임교원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대학 설립·운영 규정)가 도입되면서 대학교원 제도는 복

잡해지고 있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전임교원 중에도 근무 기간·급여·근무 조건·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 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계약제 교수 임용제도 시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비전임교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강의 교수·연구 교수 등 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전속 교수는 전임교원의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전임 대학교원의 유형은 18 가지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명칭과 임용 조건 및 임무 등에 있어 대학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단순히 직위 부여 명칭만으로 임용 자격이나 보수 또는 임무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각종 명칭의 교원 유형에 대한 임용 실태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II. 비전임교원의 유형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 17조, 교육공무원법 제 18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7조 그리고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제 6조 등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에서도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명예교수 등 일부 비전임교원 임용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타의 비전임교원 임용과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인사 규정 또는 개별 내규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겸임교원

겸임교원의 임용 요건과 임용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 7조의 2에 잘 규정되어 있다. 즉 겸임교원은 대학교수 자격이 있는 공무원 또는 기업체의 임직원 중 대학의 관련 교과와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필요 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겸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런데 당해 대학 재직 교수 중 다른 학과나 연구소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교수를 겸임교수라 하는 대학(서울대). 겸임교수의 자격 기준을 전임교수 자격 기준보다 높게 설정한 대학(성균관대), 겸임교수 제도를 국책연구소나 산업체와의 연구인력 교류에 중점을 두는 대학(건국대)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2. 초빙교원

대학은 국가기관·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외국인 중 교수 자격이 있는 자를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 31조). 그리고 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관한 일반 규정은 없고, 국립대학 외국인 교수 채용 규정이 있을 뿐이다.

초빙교원 임용 유형도 대학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자격 기준을 전임교원보다 높게 규정하고 임용 기간을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하는 대학(서울대), 그 임용 재원을 개인이나 기관의 기탁금·부담금으로 하여 3년 기간 이내로 임용하는 대학(전북대),

임용 기간을 4개월 또는 10개월 단위의 단기간으로 짧게 정한 대학(연세대), 임용 기간을 1년 단위의 단기간으로 하는 대학(성균관대), 초빙교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9학점 이상 수업 담당의 경우 전임교원 기준 보수를 지급하는 대학(서울대) 등 여러 가지이다. 또한 초빙교수 유형을 다시 석좌 교수, 강의초빙교수, 연구초빙교수, 산학협력초빙 교수 등으로 세분하는 대학(경북대)도 있다.

3. 명예교수

명예교수 규칙(교육부령)에 의하면,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당해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당시 총장, 학장, 또는 교수로 있던 자로서 재직 중 교육상·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여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자 이어야 한다. 그런데 교수 재직 기간을 25년 이상으로 규정한 대학(서울대, 서울시립대), 20년 이상으로 규정한 대학(성균관대, 건국대), 15년 이상으로 규정한 대학(경북대), 업적이 현저한 경우는 별도로 재직 기간을 5년 낮추어 15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학(서울시립대) 등 명예교수 추대에 있어 당해 대학 재직 기간을 대체로 법정 기준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재직 중 업적에 대한 일반적 기준 평가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4. 객원교수

객원교수란 용어가 제도적으로 사용된 것은 '국립대학 외국인 교수 채용 규정' (문교부 훈령 제 308호)에서 비롯된다. 외국인은 헌법상 공무담임권(국민 전체의 봉사자) 부여가 곤란하다는 해석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교수로 임용하지 못하고 이에 준하는 '객원교수'로서 대개 1년 단위로

임용하였다. 사립대학의 경우는 교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므로 정규교원 임용으로 임용되기도 하였으나 국립대학의 경우를 준용하는 대학이 많았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학에서 저명한 인사를 시간강사로 초빙하는 경우 객원교수라는 칭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객원교수는 권위 있는 강사로서 1년 단위로 임용되는 국내외 인사라는 의미로도 인식되고 있다. 성균관대의 경우는 개인의 기탁금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임용된 교수에게 객원교수 명칭을 부여하고 2년 계약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외국인을 객원교수로 임용하는 경우는 복무나 보수에 있어 전임교원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인사의 경우 월정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석좌교수

석좌교수는 학문의 수준이 아주 깊은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 주는 자리를 의미이므로 대체로 탁월한 연구 업적이 있는 인사를 석좌교수로 초빙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 있는 인사 또는 학교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명망 있는 인사의 경우도 석좌교수로 초빙(서울대·연세대 등) 할 수 있게 개방하고 있으므로

로 결국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는 석좌교수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석좌교수의 임용 기간은 대개 1년 내지 2년 단위로 임용하고, 그 보수의 재원은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이 기부한 금액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 한다. 다만 연세대의 경우는 기금과 교비의 부담 비율을 각각 50%를 원칙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

6. 기금교수

기금교수 제도는 서울대·경북대 등의 기금교수 운영 규정에 나타나 있는데, 그 자격은 대학교원 자격이 있어야 하고 임용 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우는 교육공무원에 준하며, 보수 재원은 외부 기관, 개인의 기탁금, 부담금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한다. 이 제도는 재원의 측면에서는 석좌교수와 유사하지만 임용 자격, 임용 기간, 그리고 복무(수업 담당 등)에 있어서는 일반 전임교원과 비슷하다.

7. 특임교수

특임교수 제도는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규정에 나타나 있는데, 그 자격, 임용 절차, 임용 기간 그리



“

전임교원은 법정 자격을 갖추고, 대학에 상근하면서,
학생을 직접 교육하거나 연구만을 위해 법적 절차에 의하여 임용되는 반면
비전임교원은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서
교과 운영 또는 특정 연구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에 의해 임용된다.
따라서 전임교원은 포괄적 임용 계약이고
비전임교원은 부분적 임용 계약이라 할 수 있다.

”

고 재원 등을 살펴보면 석좌교수와 외형적으로 구분되지 아니한다. 다만, 처우에 있어 석좌교수의 급여는 당해 대학 전임교원에 준하되, 탁월한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 대우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특임교수의 경우는 급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운영 재원에 있어 출연된 기금 및 그 과실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외래교원

외래교원은 성균관대학교 의과 대학교원 인사 규정에 나타나 있는데, 교육병원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학생의 실습 및 지도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은 교원이 대학에 출강하지 아니하고 대학이 배정한 학생에 대하여 일정기간 실습 등 지도 임무를 부여할 때 활용되고 있다.

9. 임상교원

의료기관 상근 의료직 중 학생의 임상실습·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을 임상교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성균관대의 경우 임상교원의 보수 및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10. 계약제 교수

경기대학교의 경우 계약제 교수 임용은 그 자격·임무·보수 등이 모두 전임교원에 준한다. 그리고 임용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봉계약에 의하되 보수는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점에서 보면 기존 전임교원과는 재임용 문제와 보수체계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1. 대우전임교원

대우전임교원은 명칭 그대로 하면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는 것이다. 성균관대의 경우 주당 3시간의 책임 시간을 부여(9시간 초과 불가능)하고 보수는 전임교원 11호 2급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전국대의 경우는 본교 15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교수에게 단지 명예직으로 부여한다는 점에서 명예교수 자격 부여 재직 연수 20년 이상에 약간 미달한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인 것으로 보인다.

12. 강의교수

강의교수는 강의만을 전담하는 임무를 부여하여 임용하는 제도로서 1999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표 1〉 비전임교원 명칭과 채택 대학 수 현황

구분	전체 대학 수	비전임 명칭별 채택 대학 수																	
		시간 강사	겸임	초빙	명예	객원	석좌	기금	특임	외래	임상	계약	대우	강의	연구	교환	방문	예우	산학연
국·공립대	26	26	23	13	20	14	1	7	0	1	1	12	1	0	3	2	0	0	0
사립대	135	135	117	60	57	45	18	2	3	4	2	18	36	5	26	7	1	2	2
합계	161	161	140	73	77	59	19	9	3	5	3	30	37	5	29	9	1	2	2

※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부 집계 자료

것으로 보인다. 강의교수 임용 자격이나 보수는 전임교원에 준하고 있으나 강의 담당 시간 수와 임용 기간 및 교원 연금 가입 등에서 차이가 있다. 강의 책임 시간은 주당 9시간 내지 18시간(동신대 9시간, 단국대 12시간, 서울여대·강남대 15시간, 한림대 18시간)까지 규정하고 있다. 임용 기간의 경우 1년 내지 3년(한림대 1년, 서울여대 3년) 단위로 하고, 연봉계약제가 대부분이다. 강의교수는 재임용 관계에서 일반 전임교원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원 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한림대의 경우는 강의교수로 임용된 자도 교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13. 연구교수

연구교수는 수업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연구만을 전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대 등 국·공립 대학의 경우는 전임교원으로 재직하는 자 중 일정 기준에 의거 1년 정도의 연구 임무만을 부여하는 교원을 내부적으로 연구교수라 칭하고 연세대, 한림대 등은 외부 인사에게 일정 기간 연구 임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별도로 연구교수를 임용하고 있다. 단국대의 경우는 연구교수로 임용된 자도 연구 이외에 일정 시간의 강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용 기간은 대체로 1년으로 하고 있으며, 경

우에 따라서는 2년만 경우(단국대)도 발생하며, 이는 개별 계약에 의해 임용된다.

14. 교환교수

교환교수는 국내외 대학간 협력에 의해 일정 기간 다른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수를 말한다. 따라서 소속 대학 신분을 유지하면서 타 대학에서 강의나 연구 업무를 수행한 후 복귀하는 교수이다.

15. 시간강사

시간강사는 비전임교원의 대표적 유형으로 일정 교과에 대한 수업만을 담당하는 교원으로서 모든 대학이 운용하고 있다. 시간 강사는 학기 단위로 위촉되며 다른 대학에 재직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촉되며 시간당 일정 강의료만 지급된다. 따라서 시간강사 제도는 가장 활용하기 용이한 유형이다.

III. 비전임교원 임용 현황

우리나라 4년제 일반대학(161개 대학)의 비전임교원의 유형별 활용 대학 수 그리고 임용 인원을 2001년 4월 1일을 기준하여 살펴보자.

먼저 명칭별 임용 유형과 각 유형을 운용하고 있는 대학 수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적 유형인 시간강사 제도는 모든 대학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의거 일정 비율을 전임교원으로 산정 해 주는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제도도 많은 대학들이 운용하고 있다. 명예교수 제도는 모든 대학이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개교 역사가 짧은 대학은 적용할 수 없어 현재 77개 대학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금, 특임, 외래, 임상, 강의, 교환, 방문, 예우, 산학연교원 등의 유형은 겸임, 객원, 석좌, 기금, 계약교원 등의 유형과 유사하여 일부 대학들이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비전임교원의 유형별 임용 인원이 전체 대학교원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전체 대학교원 중 비전임교원 수는 전임교원 수의 146%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체 비전임교원 중 시간강사 수의 비중은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타 겸임·초빙교수 등 17개 유형의 비전임교원 수는 10,463으로 17%이다. 또한 겸임·초빙·명예 교수 등 법적 명칭을 부여한 3개 유형의 교수 수는 8,231명으로 시간강사를 제외한 전체 비전임교원 수의 79%이다. 따라서 법적 명칭 이외의 교원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14개 유형의 대학교원은 채택 대학 수나 임용 인원수에 있어서 소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별 대학의 측면에서 보면, 특정 비전임교원 유형을 활발하게 운용하고 있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 비전임교원 유형별 가장 많은 수를 임용하고 있는 대학의 사례를 보면, 겸임교수 191명, 초빙교수 137명, 명예교수 157명, 객원교수 82명, 석좌교수 9명, 기금교수 144명, 특임교수 14명, 외래

<표 2> 비전임교원 명칭별 임용(초빙) 인원 수 현황

	국·공립대	사립대	합계
전체 전임교원수	11,504	31,710	43,214
비전임명칭별채택대학수	시간강사	11,668	41,002
	겸임	368	4,581
	초빙	188	899
	명예	902	1,293
	객원	145	459
	석좌	3	49
	기금	254	9
	특임	0	22
	외래	22	138
	임상	14	106
	계약	106	160
	대우	7	284
	강의	0	48
	연구	21	303
	교환	2	10
	방문	0	15
	예우	0	21
	산학연	0	34
	합계	13,700	49,433
			63,133

*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부 집계 자료

교수 70명, 임상교수 25명, 계약교수 50명, 대우교수 37명, 강의교수 16명, 연구교수 57명, 산학연교수 33명 등 대학에 따라 차이가 크다.

IV. 결론 및 제언

전임교원은 법정 자격을 갖추고, 대학에 상근하면서, 학생을 직접 교육하거나 연구만을 위해 법적

절차에 의하여 임용되는 반면 비전임교원은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서 교과 운영 또는 특정 연구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에 의해 임용된다. 따라서 전임교원은 포괄적 임용 계약이고 비전임교원은 부분적 임용 계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임용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비전임교원에 대한 직위 명칭이 다양하고 동일한 명칭의 경우에도 대학에 따라 계약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의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하여 현행 법령은 몇 가지 유형을 언급하고 있는데, 겸임교원·초빙교원·명예교수·객원교수(외국인 교수) 및 시간강사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석좌·기금·특임·강의·연구 등 앞에서 조사된 13개 유형의 비전임교원은 비법정 비전임교원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13개 유형의 비전임교원에 대한 자격 요건이나 담당 기능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법정 비전임교원의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별도의 다양한 명칭을 부여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전임교원의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된 주요 원인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법적 명칭 자체의 구분이 명료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겸임교원·초빙교원 및 시간강사는 실질적 임용 요건간 명확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학이 어

떤 명칭으로든지 자유롭게 혼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둘째는 대학교원은 초·중등교원과 달리 대학에서 근무하는 시간의 차이가 교과 또는 개인에 따라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는 명칭 구분의 기준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즉 상근 여부, 겸임 여부, 보수채원 구분, 임용 계약 기간 차이, 명칭 자체의 우열성 등 여러 가지 기준이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그리고 괴임용 당사자 개인의 입장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대학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전임교원의 유형을 대학마다 자유롭게 정하여 다양하게 운용하는 것에 대하여 아직까지 문제로 제기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비전임교원의 비중이나 유형이 더욱 확대될 경우 대학교원 인사제도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 자료〉

- 김낙운(1986).『교육법해설』. 하서출판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2년도 대학교원 통계"
(내부자료).

14개 대학(서울대, 경북대, 건국대, 전북대, 서울시립대, 한림대, 성균관대, 연세대, 홍익대, 서울여대, 강남대, 경기대, 동신대, 단국대) "교원 인사 내규".

